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 정	2017. 1. 31.
개 정	2017. 6. 30.
개 정	2017. 12. 29.
개 정	2019. 1. 10.
개 정	2020.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이라 한다)이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으로 국가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환경부 고시「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2조에 따라, 이차보전 민간융자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신청, 심사, 승인 및 대출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제2항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환경산업육성자금
2.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자금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는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융자”란 환기원이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융자하고 정부는 당해 융자금의 조달비용에 대하여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 분야 자금”이란 융자 신청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전 분야 자금”이란 융자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성 제경비(인건비, 원료 구입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시설설치자금”이란 환경산업체의 성장을 위한 사업운영에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삭제, 2020. 1. 23>
6. “성장기반자금”이란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성 운전 분야 자금을 말한다.
7. “해외진출자금”이란 환경산업체 대상 해외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비성 운전 분야 자금을 말한다.
8. “유통판매자금”이란 환경산업체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설치하는 직영 판매 사업장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실내장식비 및 광고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운전 분야 자금을 말한다.
9. “오염방지시설자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물환경보전, 하수처리, 물질약, 물의 재이용, 토양정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구입·설치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이용 제외)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누·유출 등 사고와 재해 발생의 예방, 억제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는 방지시설과 장비의 설치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1.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영세 재활용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하는 경비성 운전 분야 자금을 말한다.

12. “시장안정화자금”이란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 및 비축에 소요되는 경비성 운전 분야 자금을 말한다.
1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과 동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1회용품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대체하는 물질을 말한다.
15. “천연가스공급시설”이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6. “물절약사업(WASCO사업)”이란 「수도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물 사용자의 물이용 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등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사업을 대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감액으로 기 투입한 시설설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17. “물절약전문업자”란 물절약전문업을 하기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8. “용자신청”이란 환기원이 정하는 소정 양식의 용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이하 ‘용자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9. “용자신청자”란 환경정책자금 용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용자신청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20. “한계기업”이란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3]와 같다.
21. “승인”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환기원장’이라 한다)이 용자신청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승인을 말한다.
22. “예비승인”이란 용자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 결과가 승인기준에는 적합하나, 용자금 예산 및 용자승인 한도와 제9조에 따른 우선지원 순위로 인하여, 제10조의 용자승인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3. “대여”란 환기원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
24. “대출”이란 환기원과 약정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승인 기업에게 자금을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
25. “용자사업자”란 자금을 용자받았거나 용자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6. “시공업체”란 용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7. “용자심사위원회”라 함은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 제9조에 따라, 용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위원회를 말한다.
28. <삭제, 2017. 1. 8.>
2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1. “목적 외의 사용”이란 이 요강 제4조제2항 [별표1]의 범위와 용도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익의 용도로 용자금을 사용(임직원의 용자금 유용·횡령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환경관계법”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기타 환경부 소관 법률을 말한다.

제 2 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제4조(지원대상) ① 용자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각 사업 별로 다음 각 호과 같다.

1. 환경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
 2. 환경개선자금 : 중소, 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중소, 중견기업
 4.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중소, 중견, 대기업(중소기업 우선 지원)
- ② 지원 사업과 분야 별 지원대상 및 용자금 사용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범위) ① 용자지원금은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매각 목적의 시설을 제외한다.

- ② 운전 분야 자금은 용자신청 접수일 이후에 사용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③ 시설 분야 자금은 용자신청 접수일 이후에 착수(착공)하거나 접수일 현재 미완료(진행중)인 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기존 시설(건축물 포함)의 개조·변경(단, 단순 시설 보수 비용은 제외한다)
 - 2. 시설(건축물 포함)의 신규 증설 및 교체 신설
 - 3. 위 1호와 2호에 필요한 토목공사 비용
 - 4. 환경개선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는 시설 및 건축구조물로, 설치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금액이 1억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감정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동일시설을 제작하는 타 업체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견적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 ⑤ 용자지원금은 제1항의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제13조제1항의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실제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한다.
- ⑥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용자사업연도 중 시설분야와 운전분야를 동시에 용자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자신청 및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1. 과거 용자지원 이력이 없는 최초 용자신청자
 -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장안정화자금
- ⑦ 제7조제10호에 의한 조회 결과, 당해 용자신청액(시장안정화자금 제외)을 포함하여 제외기준(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용자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조건) ① 각 자금별 용자지원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 ② 용자 대여금은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상환일정에 따라 매분기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기한 전 상환시 대출금은 선입선출법으로 차감한다. 단,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의 상환일정은 환기원이 용자재원 조달기관으로부터 최초 차입하는 인출금의 상환일정에 따른다.

- ③ 대출금리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을 따른다.
- ④ 환기원은 고용실적과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신청업체에 한해 용자지원 조건상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기원장이 따로 정하되 환경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18호에 따른 [별표 3]의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2. <삭제 2018.12.31>
3. 승인 분야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가. 운전 분야 자금 신청
 - 나. 시설 분야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지원내 용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
4.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사업자로 용자신청일 현재 환경관계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다툼이 진행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과거 용자지원을 받은 사업자로서 제10조에 의한 최근 용자승인 년도 기준으로 1개 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긴급경영안정 자금, 시장안정화자금은 적용하지 않음)
6. 제18조에 따라 용자승인이 취소된 후 용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용자원리금의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위사실, 위·변조”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용자승인이 취소된 후 제20조에 따른 용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기타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9.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10.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5년간(당해 사업연도 포함) 정부지원이력 조회 결과, 전체 지원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단, 환경개선자금, 시장안정화자금 및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제외한다.
11. 제14조제3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도과)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3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업기간 도과)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제22조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 다만, 지원제외 기간은 보고의무 연도 후 지원연도 1개년으로 하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은 본조 5호의 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 3 장 신청 및 심사

- 제8조(신청접수)** ① 융자신청자는 신청분야 및 자금용도 등의 충분한 검토 후 기업 현황정보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별표 4]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환기원은 융자규모 및 접수방법 등 지원계획에 대한 안내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 ④ 융자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융자신청 접수는 매분기 별 소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되 제11조의 초과승인과 연계승인 및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접수액 한도를 정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한도 도달 시 공고된 접수기간 전에 조기 접수 마감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접수는 융자금 집행현황 및 전망에 따라 신청접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 시행할 수 있다.
 3. 긴급경영안정자금, 시장안정화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연중 수시 접수할 수 있다.

4.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은 2분기 일정부터 신청접수 한다.
5. 시장안정화자금은 환경부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자금지원’ 결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단, 3차 회의 또는 9월까지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성장기반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 충당하여 접수할 수 있다.
- ⑤ 용자신청 금액은 최소 이천만원(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백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⑥ 환기원은 제1항에 따라 용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환기원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와 세무법인(회계법인)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용자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용자신청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용자신청자가 직접 준비하고 용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환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지원순위 결정) ① 환기원은 접수된 용자지원 신청서류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단,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제외한다.

- ② 용자신청자는 제1항의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용자지원시스템 상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별표 5]의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접수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③ 평가는 제2항에 따라 용자신청자가 용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로 표시하고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 ‘총자산이익률(ROA)’ 평가 득점자
 2. ‘고용 실적’ 평가 득점자
 3. ‘수출 실적’ 평가 득점자
 4. 용자신청 접수 순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순위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자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先)순위를 부여한다.

1.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미만 및 매출 10억 미만)
2.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3. (환경개선자금) 환경부와 대기오염, 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기업으로서 대기시설 개선 자금 신청 기업
4.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5.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6.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7. 제11조제2항의 연계승인 기업
8.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우선지원이 시급하다고 환기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사 및 승인) ① 환기원은 용자지원 여부와 승인금액을 용자 심사승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환기원은 신청·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제9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지원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승인한다.

1. 제9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른 사업연도 용자금 예산 한도(용자지원 규모) 내 용자신청자를 승인하되, 최하위자의 승인 예정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한다.
2. 위 제1호에 따른 용자승인 후 용자금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후순위 용자신청자는 제12조의 예비승인에 따른다.

③ 환기원은 용자신청자가 [별표 3]의 신청서류를 누락하였거나 추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가 필요한 경우, 용자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최대 7 영업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용자신청자의 지원순위는 가장 후순위로 하되 보완 완료 순서에 따른다.

④ 환기원은 용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환기원은 용자 신청접수 마감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별도로 신청접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시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직후 영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단, 과다한 용자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환기원은 용자 심사승인 결과와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을 용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용자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⑦ 환기원은 용자신청 내용이 용자목적과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승인되지 아니한 용자신청자는 환기원이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동일 건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초과승인 및 연계승인) ① 환기원은 용자승인 후 승인취소 및 포기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용자사업 별 용자금 예산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용자승인 할 수 있다.

- ② 환기원은 용자금 예산이 소진되고 최종적으로 제1항의 초과승인에 해당하게 되어 용자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해당 승인잔액 부분을 익년도로 승계하여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연계승인 시 대상자는 용자취급 금융기관과 담보심사 및 채권보전 협의가 완료된 업체에 한하며, 연계승인에 따른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차년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제12조(예비승인) ① 환기원은 용자신청 내용의 심사결과 승인 기준에 적합하나, 예산한도를 초과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에 의거하여, 용자신청자를 예비승인할 수 있다.

- ② 예비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용자승인을 대기하는 상태와 지위를 가지며 환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비승인 기업을 추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최초인출기간 30일을 준수하지 못한 선순위 승인기업의 용자승인 규모의 최대 200% 이내에서 환기원의 용자금 집행 전망에 따라 적의 결정하여 용자승인
 2. 선순위 승인기업의 승인 취소, 포기, 축소 등에 따른 변동금액의 200% 이내에서 환기원의 용자금 집행 전망에 따라 적의 결정하여 용자승인
 3. 예비승인 기업은 직후 차회(분기) 신규 용자신청자에 우선하여 용자승인한다.
- ③ 제1항의 예비승인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용자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용자신청자의 용자신청 및 예비승인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제13조(사업기간) ① 융자금의 사용기간인 사업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진행 지연
2. 입지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한 주변 민원 해소, 관공서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진행 지연
3. 제16조의 최초인출기간 연장으로 인해 착공 등 착수가 지연되어 완료기간이 부족한 경우
4. 융자승인 기업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5. 그 밖에 환기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의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 융자사업자는 문서로써 사유를 적시하고, 환기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 내에서 적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승인변경)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승인서상의 일반사항 및 승인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환기원에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신고하고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기원은 융자 승인기업의 업종 변경, 흡수·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융자사업자는 승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환기원 및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승인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고, 즉시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승인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환기원은 융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경고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 지급

제15조(승인 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승인서 상의 최초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융자금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며, 융자승인서 상의 사업기간 내에 융자승인액의 전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 ② 용자취급 금융기관은 환기원과 약정이 체결된 금융기관 1개로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변경은 용자지원시스템을 통한 승인변경 요청과 환기원의 요청승인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용자금은 일백만원 단위로 하여 용자승인 내역 상의 공사·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되, 계약금, 선금금 및 용자승인 전 기 지급한 기성 대금의 총당 목적의 대출신청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운전 분야 자금
 2. 승인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시설 분야 자금
 3. 시설 분야 용자신청 접수일 이후 최초인출기간 내에 시설의 설치, 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
- ④ 용자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1회차 용자승인액은 최소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환기원의 용자금 예산의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승인금액의 10% 내로 감액조정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최초인출기간) ① 용자승인 기업은 용자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승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받거나 환기원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 최초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용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환기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최초인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용자금 취급 금융기관(은행 및 영업점) 변경
 2.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심사 지연
 3. 설치·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환기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제17조(금융기관의 대출금 지급) ① 용자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금융기관은 채권보전 등의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환기원에 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금액은 승인금액 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 ② 취급금융기관은 용자금을 대출할 때 시설의 제작·설치 또는 공사 현장이나 용역제공, 물품구매계약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 청구에 따라 투입된 실제금액을 확인한 후 일백만원 단위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용자금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대출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괄 대출할 수 있으며, 환기원이 승인한 내역 상의 계약금, 선금금 및 기 지급한 공사비 총당 용도로 용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 ④ 용자금의 분할 취급 시 최초 1회차 분할 대출금은 용자승인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환기원의 용자금 운용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 최초인출금액을 승인금액의 10% 내로 조정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⑤ 취급금융기관은 시설자금 분야에 대한 용자금 지급 시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자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용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⑥ 용자사업자 또는 연계승인 용자사업자가 용자승인 내역 상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먼저 일반대출을 이용한 경우, 차후 용자 대출금으로 우선 이용한 일반 대출금의 상환, 대환, 대체 등의 형태로 충당할 수 있다.
- ⑦ 취급금융기관은 용자조건을 변경하거나, 환경정책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으로 용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 5 장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제18조(승인의 취소) ① 환기원은 용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금액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용자승인서에 명시된 최초인출기간 내에 용자금을 최초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용자승인을 받은 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정지·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3. 국세체납, 부도,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경매절차 개시 또는 허가, 등록 취소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폐업을 하거나 기타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용자신청 제출자료의 위·변조 등 제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용자승인 후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 제7조제3호에서 정한 타 기관의 정부정책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

나. 제7조제4호에서 정한 환경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5호에서 정한 용자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라. 제7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강에 따른 보완, 완료보고, 실태조사 등에 대한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용자지원을 받아 제작, 설치한 시설을 용자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상·무상 임대 또는 매각 사실이 완료점검 시 확인된 경우

② 환기원은 용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금액 중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용자신청서 및 용자승인 내용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목적 외 사용’ 한 경우

2. 용자금을 용자신청서 및 용자승인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도 완료보고 증빙자료가 부적정·부실한 경우

3. 용자사업자가 제13조에 규정된 사업기간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인출 잔액이 발생한 경우

4. 용자승인을 받은 후 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승인일 이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 영업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③ 환기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자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용자승인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용자금 회수) ① 환기원은 제18조에 따라 용자사업자의 승인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미 대출된 용자금 중 취소된 용자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환기원은 승인 취소된 용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용자금 회수 내용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고 환기원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취급금융기관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용자사업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6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환기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환기원은 제18조의 승인취소 중 제1항제5호(허위, 위·변조) 또는 제2항제1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승인취소와 용자금 회수 처분이 결정된 용자사업자의 용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회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원리금은 처분 공문서 상의 통보일 현재 용자금 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은 정책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실제 회수·납입일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

- ③ 제2항의 원리금에 대한 연체금리는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용자 사업관리

제21조(사업관리 및 실태조사) ① 환기원은 용자신청자 또는 용자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하며 이때 현장실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승인심사 : 용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의 심사승인을 위한 서류심사 업무
2. 중간(진도)점검 : 용자금의 최초인출 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용자사업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서류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3. 완료점검 : 용자사업자의 사업완료 후 설치시설의 완공과 정상 운영 및 인·허가 취득 여부, 용자금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류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4. 사후관리 : 완료점검 후 용자금 상환완료까지 기간 중 기업 현황과 원리금회수에 대한 점검으로 필요시 사안에 따라 시행

- ②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1. 운전 분야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과 ‘성장기반자금’ 용자금 신청 및 지원
2. 시설 분야 신청 내용이 기성 제품(장치·설비) 구매 및 차량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한 현황 확인 등이 가능하며, 환기원의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시설 분야 융자금 신청 및 승인액이 1억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5. 운전 분야의 ‘시장안정화자금’ 융자금 신청 및 지원(단, 비축창고 임차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실시 가능)
- ③ 융자신청자, 융자사업자, 시공업체 및 금융기관은 환기원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환기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융자신청자, 융자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제2항의 사항 외에 조사내용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 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련 상황을 환기원에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6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진행보고 : 환기원의 자금사용과 설치 등 진행현황 보고 요구 시
2. 완료보고 :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단, 부가세 등 행정기관 신고 후 증빙 내역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신고사항 등을 완료한 후 제출하여 보완 가능
3. 성과보고 : 지원연도 하반기와 2년 뒤(지원연도+2년)에 총2회의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산업육성자금 : 매출액(성장성, 수익성 등), 고용현황 및 수출실적 등 보고

나. 환경개선자금 : 오염방지시설은 설치 전·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실측) 결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설치(또는 개선) 이후의 법률 상 취급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개선명령(또는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폐기물처리량, 매출액(성장성, 수익성 등), 고용현황 및 수출실적 등 보고

라. <삭제, 2020. 1. 23>

- 마. 기타 정책 방향과 각 용자사업 특성에 따른 추가 분석 필요 사항
- 4.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수사·공판 발생 즉시
 - 나. 기타 용자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이해당사자와의 분쟁, 민원, 행정처리 지연 발생 즉시
- ② 제1항제3호 ‘성과보고’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환기원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23조(금융기관의 자금관리)** ① 용자취급 금융기관은 용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자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용자취급 금융기관은 용자사업자가 압류·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폐업 등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즉시 사유와 현황을 환기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용자취급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중인 전체 용자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사유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환기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용자심사위원회

제24조(설치목적)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제9조에 따라, 용자지원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환기원에 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삭제, 2020. 1. 23>

- 제2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자문의결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환기원장이 위촉한다.
1.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환경분야, 공학분야의 부교수 이상 경력 3년 이상인자
 2. 환경 또는 공학 분야 관련 연구기관의 5년 이상 종사자

3. 환경(재활용)시설 제작·설치·운영 및 환경 관련 업종에 7년 이상 종사자
4. 환경 또는 공학분야에 업무경험이 있는 7급 이상 환경부 소속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속하는 직에 있었던 자
5. 환경원의 용자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임급 이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타부서 소속 직원인 자
6. 그 밖에 환경산업 관련 정보, 기술,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기술업무, 환경측정기기 개발·생산, 폐기물재활용 등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된 회의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출석한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안건 및 기업의 이해 당사자 및 친·인척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이력이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협회, 단체 및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

제2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자운용요강 제7조에 따른 지원제외에 대한 이의신청
2. 용자운용요강 제10조에 따른 용자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3. 용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른 승인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4. 용자운용요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용자금 회수에 대한 이의신청
5. 그 밖에 용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제3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과 외부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용자심사기한이 촉박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절차 등은 소집에 의한 회의의 경우를 준용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기원의 용자업무 소관부서장(당연직)으로 하며, 부재 시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전임급 이상의 연구원이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1조(대리참석) 위원회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수당 등)**
- ①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수당과 여비 등 지급에 있어서 외부위원 수당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환기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결과통보) 환기원장은 위원회의 최종결정 결과를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 금융기관 등 관련자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36조(이의신청) ① 제7조의 지원제외, 제10조에 따른 용자 불승인, 제18조의 승인 취소,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용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문서로써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환기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환기원은 20일 이내에 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부당행위 금지) 환기원 및 업무담당자는 용자지원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용자신청자 또는 용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용자신청내용과 무관한 추가 자료 요구
2. 컨설팅사 등 용자지원사업 신청 등 행정처리 대행업자 소개 또는 추천
3. 심사승인 및 각종 점검업무 등의 편의를 조건으로 한 금품 등 대가 수수
4.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승인 등 각종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5. 용자요강 등 규정 상 문제점이 없는 용자신청에 대한 불승인 또는 감액 승인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제38조(용자신청자 및 용자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용자신청자 및 용자사업자는 이 요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이 요강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용자신청자 및 용자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용자사업자는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환기원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기간계산 등) 용자승인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40조(취급 금융기관) 용자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환기원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제41조(정보공개) 환기원은 용자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용자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42조(공익신고) 용자신청자 또는 용자사업자는 환기원의 업무담당자로부터 금품·향응 요구, 폭언·폭행,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기타 부당한 지시를 강요 받은 경우와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즉시 환기원 공익신고센터 또는 감사실에 신고, 제보할 수 있다.

제43조(기타) ① 용자신청자 및 용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환기원장은 기업수요에 따라 시설과 운전 분야 용자규모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족한 지원분야에 대하여 용자규모의 일부를 전환하여 상호 충당할 수 있다.

③ 환기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안정화자금’에 배분된 용자금을 ‘성장기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부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시장안정화자금 지원 여부를 제3차 정기회의 또는 7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기원장은 환경부로 전환 지원을 사전 통보하고 용자금을 집행한다.

2. ‘시장안정화자금’ 지원 예산의 연도말 미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원장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자금을 집행한다.

④ 환기원장은 이 요강의 해석과 시행 및 그 밖의 효율적인 용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1조의 적용례) 용자신청자 및 용자사업자에 대한 이 요강 제21조 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부터 수행하는 업무 대상 기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용자지원 대상 및 사용용도(제4조 제2항 관련)

1. 환경산업육성자금

가. 지원대상 : 중소 환경산업체, 재제조제품 제조업체, 녹색매장 인증 유통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환경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환경부)」상 업종과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제외)
- 폐기물 처분 사업자 : 폐기물 소각장 사업자, 매립장 사업자
- 재제조 산업체 : '시설설치자금' 만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제조업체
-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 '유통판매자금' 만 지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사업자

나. 용자금 사용용도

분야	세부분야	사 용 용 도
시 설	시설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 설치비 • 환경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 장비 구입비 • (재제조산업체) 폐기단계의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세척·검사·보수·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하는 시설, 장치, 장비 구입비
	해외시설 설치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공장 등 사업장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운 전	성장기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원·재료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 - 자금 용도 불인정 : 승용차량 유류비, 각종 식대 및 행사비용, 무선통신비(휴대폰), 사무실 인테리어비 및 사무비품 비용, 기타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해외진출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납품, 수출품 제작을 위한 인건비, 원·재료비, 전기요금, 연료비, 항공·선박 운임 등 • 현지법인 및 현지영업소(판매장) 운영, 해외인검증 비용,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비 등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운전자금성 비용 * 항공운임 인정 범위 : 해외 박람회·전시회 홍보관(부스 등) 운영, 현지 영업소·사업소 설치 추진 및 운영의 경우 또는 해외 수출·수주 체결에 따른 항공 운임 - 자금 용도 불인정 : 현지인 단기고용(6개월 미만) 인건비, 식대 및 단순 행사비용, 현지 사무비품 비용, 기타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유통판매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매장 임차보증금, 실내·외 장식비, 매장 매입비 등 직영매장 운영성 비용 • 판로개척, 수주확대를 위한 판촉활동 비용 : 광고홍보비, 국내 박람회·전시회 참가비, 온라인마켓 및 통신판매 운영비 등 - 자금 용도 불인정 : 승용차량 유류비(교통비), 각종 식대 및 행사비용, 유·무선 통신비, 사무비품 비용, 기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녹색매장'의 경우, 매장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실내·외 장식비, 판매용 친환경 제품 매입비 등 매장 운영성 비용

2. 환경개선자금

가. 지원대상 : 중소, 중견 기업의 환경시설 또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취급 시설

나. 지원범위 : 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 (단, 개별 법규정에서 인정하는 건축구조물 인정)

다. 용자금 사용용도

분야	세부 분야	관련 법률	사 용 용 도	
시 설	대기 환경 보전법	• 제26조 및 제29조의 단독 또는 공동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대기오염물질, [별표 2]특정 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제32조의 측정기기 부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 설치시설	
		•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등)	
		•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 제62조 및 제63조의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장비	•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동 시행규칙 [별표26]에 해당하는 검사 장비	
		• 제76조의11의 냉매 회수업의 등록	• 동법 시행령 [별표 14의2]의 건축물 냉방기, 공조기 등의 냉매 회수시설	
	오염 방지 시설 자금	물환경 보전법	•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38조의2제1항의 측정기기	• 동법 시행령 [별표 7]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제60조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법	•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시설	
	수도법	• 제15조의2의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 물절약전문업자가 신청하는 물절약(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 시설공사비용 <환경부 공고 제2014-515호 물절약전문업 업무처리지침>	
		• 제15조의2의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 물절약전문업자가 신청하는 물절약(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 시설공사비용 <환경부 공고 제2014-515호 물절약전문업 업무처리지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분야	세부분야	관련 법률	사 용 용 도										
			제1항 제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 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조)										
		• 제10조의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시설 - 1일 하수처리 용량 5,000m³ 이상인 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의 시설									
		토양환경 보전법	• 제12조의 특정오염 방지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로써 누유출 방지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누유출 방지시설)									
			•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소음진동 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악취 방지법	• 제8조 및 제8의3의 악취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폐기물 관리법	• 제2조 제9호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4])									
			• 제29조의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자의 최종처리(폐기물처분)시설									
		석면안전 관리법	• 제18조의 석면비산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2]									
•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 동법 제22조의 조치로써 동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 1의2] 건축구조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비용(공공기관 제외)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자금	화학물질 관리법	• 제2조(정의)의 다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및 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따른 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별표 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대상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제조·사용시설</td> <td>-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td> </tr> <tr> <td>보관·저장시설</td> <td>- 저장탱크, 방류벽 등</td> </tr> <tr> <td>운송시설</td> <td>-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td> </tr> <tr> <td>기타 안전장치</td> <td>-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대상 시설	제조·사용시설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보관·저장시설	- 저장탱크, 방류벽 등	운송시설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기타 안전장치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구분	주요 대상 시설										
		제조·사용시설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보관·저장시설	- 저장탱크, 방류벽 등										
		운송시설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기타 안전장치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기타 동 법령 준수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증설(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등의 누유출 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										
		•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별표 1] 취급시설	[관련 환경부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제4조에 따른 제한물질 [별표 3] 취급시설	- 환경부 제2018-139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및 [별표4]										
• 제5조에 따른 금지물질 [별표 5] 취급시설	- 환경부 제2017-107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가. 지원대상 : 중소, 중견 폐기물 재활용업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 ★ **용자지원 제외 대상**
 - ▷ 동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업종**
 - ▷ **폐기물 처분** 사업자 : 폐기물 소각, 매립 사업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업력 2년 이상의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 이고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나. 용자금 사용용도

분야	세부분야	사 용 용 도
시설	시설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건축비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설치 및 건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제품화를 위한 장비, 장치, 설비 등의 제작, 구입, 설치 비용
운전	성장기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 수리비, 장비임차료 •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영을 위한 연료비
	긴급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 수리비, 장비임차료 •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의 유류비, 제품 물류운송비, 보일러 등 생산설비 운영을 위한 연료비
	시장안정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매입 수거 비용(수거 매입에 수반되는 경비 포함) • 폐기물 적치 또는 보관 등 비축 창고 임차보증금 및 비축 보관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사업연도말까지의 월세, 비축창고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포함)

4.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가. 지원대상 :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충전)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나. 지원범위

- 용자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허가를 득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용자신청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
- 용자신청 접수일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가스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자

다. 용자금 사용용도

분야	세부 분야	사 용 용 도
시설	시설설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설치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토목, 건축, 배관 및 전기공사 포함) 공사비 * 환경부 고시 제2017-73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조 제1호

[별표 2]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제6조 제1항 관련)

구분	분야	세부분야	업체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인출시점분 기별 고정금리
		해외시설설치자금	3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7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해외진출자금	7억원		
		유통판매자금	3억원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50억원 (분야 합산)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50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운전	성장기반자금	1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장안정화자금	10억원 (최소 2억원)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이내)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
(전년도 평균 종업원수 대비 접수시점 종업원수 10% 이상 증가)
- 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 추가 5억원
(전전년도 수출수주액 대비 전년도 수출수주액 10% 이상 증가)

[별표 3]

한계기업 기준(제3조 제19호 관련)

1. 상(上) 한계기업 : 환경산업육성자금 신청 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미적용 : 재 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항목	한계기준	산식
재무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100억원 이상 이면서, • 부채비율 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 재무상태표 상 자산 총계 •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2. 하(下) 한계기업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전체 융자지원사업 공통)

항목	한계기준	산식
재무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잠식률 = $\frac{(\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text{자본금}} \times 100$
금융 비용 부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text{이자보상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별표 4]

환경정책자금 신청서류(제8조 제1항 관련)

1. 전체 기본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사업자등록증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 시, 직접 스캔파일 등록
2	• 법인등기부등본	
3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부속 명세서)	
4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5	•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건물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 법인 또는 개인사업 대표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에 동의 거부 시, 직접 스캔파일 등록
6	•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별표 5]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인정하지 않음.
7	•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융자취급은행)	서식 [별지 1] 출력 → 융자취급은행(영업점)과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 후 스캔파일 등록
8	•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9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의 경우만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2. 환경산업육성자금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운전, 시설 공통	• 환경산업 해당 여부 검토 자료	각종 환경분야 기술 또는 인증 등의 증서, 주요 생산품목, 회사소개
운전 분야	• 녹색매장 인증서	녹색매장 인증 유통업체가 유통판매자금 신청시
시설 분야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사양서 등 가능
	• 건축 허가서	- 공장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 - 직접 스캔파일 등록

3. 환경개선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턴키방식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건축 허가서	환경시설 공사에 건축구조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 기타 [별표1] 각 법령 상 설치에 관할 지자체 등의 인허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 증서 또는 공문서
오염방지 시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단, 신규 설치 시 “적정 통보서” 가능)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제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 자금 신청 시 - 직접 스캔파일 등록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등록증	직접 스캔파일 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4.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운전, 시설 공 통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 인허가서)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제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시설 분야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건축 허가서	- 공장 등 신축, 증축, 개축인 경우 - 직접 스캔파일 등록

4-1.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장안정화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기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 인허가서)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제출 *창업 기업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축보관 창고(건물) 등기부등본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 동의 거부 시, 직접 스캔파일 등록
해당자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축보관 창고(건물) 임대차 계약서 	자가보유 아닌 임차 운영 시

5.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증 	지방자치단체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별표 5]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번호	평가항목	증빙서류	점수
합 계				55
성장성	1	총자산이익율(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2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3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4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5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글로벌 성장성	6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3
	7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8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2
	9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10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사업 전문성	1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기원 지정서	2
	12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해당 인증서	2
	13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14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해당 녹색 인증서	1
환경기술 우수성	15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16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17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해당 증서	2
	18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지속가능성	19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사업 연계성	2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환기원 통보문	5
	21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정책 부합성	22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3
	24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25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5
	26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별표 6]

완료보고 제출서류(제22조 제2호 관련)

가. 시설 분야 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 통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세내역)	부가세신고 후 보완 제출 가능
	• 입금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 건축물·기계장치·차량 등 사진	
	• 인·허가에 따른 지자체 허가증 및 신고필증	변경신고, 가동개시신고
개 별	•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해당시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건축물 사용승인서	
	• 차량등록증	해당시

※ 시설에 따른 허가증 및 신고필증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재활용 허가증·신고필증 등
- 환경시설 시공업체, 측정분석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측정대행업 등록증 등
- 오염방지시설 : 대기·폐수·소음진동 등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필증 등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허가증·신고필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등
- 천연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 등

나. 운전 분야 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인건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재료(원료) 구입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세내역)	부가세신고 후 보완 제출 가능
	• 입금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공공요금	•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시장안정화 자금	• 비축보관 창고 운영비 증빙	월세 임차료, 전기요금 등
	• 폐기물 수거매입 증빙	- 지자체와의 수거 협약, 계약서 - 아파트단지와의 수거 계약서 - 기타 폐기물 매입 증빙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폐기물을 매입(의제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별지 1]

환경정책자금 용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 용자금 신청 기업

- 회사명 : **한국산업** (사업자번호 :)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표자 : **김한국**
- 환경정책자금 용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용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용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환경정책자금 용자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한국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장안정화자금 지원대상 등록 신청서

□ 시장안정화자금 신청자

- 회사명 : **한국산업(주)** (사업자번호 :)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표자 : **김한국**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비축·보관 시설 보유 내역

- 수거한 폐기물 비축보관 예정지 및 비축 가능량

번호	소재지	넓이, 용량 등	비축한도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3000㎡ 등	300톤
2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4길 6호	1000㎡ 등	100톤
3			

- 비축보관 가능 품목 : **고지, 파지, PET, PE**

□ 비축·보관 시설 운영에 따른 용자신청 예상액 (VAT 제외)

번호	비용 내역	금액	비고
1	임차보증금	4억원	2건
2	창고시설 월세(6개월, 7월~12월)	1800만원	
3			

본 기업은 폐기물 수거처리 안정화를 위한 '시장안정화자금' 지원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사전 등록을 신청하며, 환경부의 용자지원 결정 시 신속하게 '시장안정화자금'을 신청, 접수하겠습니다.

2 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